

보건복지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게 감호위탁을 통해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여, 타 보장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보장시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타시설과의 균형성 확보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장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복지지원 확보를 위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보장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른 보장시설에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을 “이란,”으로,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2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3(보장시설) 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41조의3(보장시설) ----- ----- -----이란, --- ----- -----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 애인 단기거주시설	1. 법 제32조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의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 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 주택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 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 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 원시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삭 제>

<u>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	
---	--